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09 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 김위상 • 박충권 • 최수진

김형동 · 김성원 · 김승수

박성민 · 김소희 · 김선교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,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 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,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는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사업주(직상수급인 포함)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을 보다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민사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던 것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아울러, 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두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금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자 자에 대해서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주요내용

- 가. 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도 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1항).
- 나.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 (직상수급인 포함)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다.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변제금, 연체금,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(안 제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사업주를"을 "사업주(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 또는 제4 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 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8조·제8조의2에서 같다)를"로 한다.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변제금의 징수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 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청구권을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[이하 "변제금(辨濟金)"이라 한다]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8조의7, 제29조, 제32조 및 제42조(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를 준용한다. 이경우 "보험가입자" 또는 "보험의 당연가입자"는 "사업주"로, "보험료" 및 "보험료, 환수금"은 각각 "변제금"으로, "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"은 "연체금"으로, "공단" 또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동부장관(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

받은 자를 말한다)"으로 본다.

제8조의3(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무)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,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(「국세기본법」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. 다만,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는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"제8조"를 "제8조의2제1항"으로, "변제금(辨濟 金)"을 "변제금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 중 "체불사업주, 부당이득자"를 "체불사업주(「근로기준법」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제8조의3에 따른 출자자,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미지급 임금등의 지급·청구권의 대위, 변제금의 징수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,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개 정 아 제7조(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| 제7조(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 급금의 지급) ① 고용노동부장 급금의 지급) ① -----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 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 자의 변제에 관한 「민법」 제4 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 ----사업주(「근로 기준법」 제44조 또는 제44조의 하여 지급한다. 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 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8조 · 제8조의2에서 같다)를-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8조의2(변제금의 징수)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 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제8조에 따라 청구권을 대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[이 하 "변제금(辨濟金)"이라 한다]

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

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제25조, 제26조의2, 제27 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8조 의2부터 제28조의5까지, 제28조 의7, 제29조, 제32조 및 제42조 (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2항제 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보험가입자" 또는 "보험의 당 연가입자"는 "사업주"로, "보험 료" 및 "보험료, 환수금"은 각각 "변제금"으로, "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"은 "연체금"으로, "공단" 또는 "건강보험공단"은 "고용노동부장관(이 법 제27조 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 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 다)"으로 본다.

제8조의3(출자자의 제2차 납부의 무)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이 납부하여야 할 변제금, 지 연이자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 발생 당시의 무한책임사

<u><신 설></u>

제18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.

- 1.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 금(辨濟金)
- 2. ~ 5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23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23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 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 급금의 지급,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,

원 또는 과점주주(「국세기본 법」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)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부의무를 진다. 다만, 과 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)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 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)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제18조(기금의	조성)	1	 	-
			 	_

- 1. 제8조의2제1항---- 변제 금
 - 2. ~ 5. (현행과 같음)
 - ② (현행과 같음)

요청) ① -----

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,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확인,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 계 전산망의 이용(이하 "자료제 공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각 호 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법원행정처장에게 <u>체불사업</u>
주,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
(이하 "체불사업주등"이라 한
다)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
사항증명서, 토지등기사항증
명서,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
「공탁법」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

2. ~ 12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

	-
	-
	_
	_
	_
	_
	_
,	_
	_

2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